

해외연수장학금지급규정

제 정 2000. 3.
개 정 2000. 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외국대학에 유학 및 연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해외연수 장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과 교류협정 또는 학생 파견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해당대학에 파견되는 학생을 칭한다.

제3조(파견목적) 해외연수장학생을 유학시키는 목적은 외국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유학기회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.

제4조(지원자격) 해외연수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제2조에서 정한자매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할 자라야 한다.

제5조(선발) ①해외연수장학생의 선발은 해외연수장학생 선발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
②해외연수장학생 선발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장학혜택) ①해외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파견대상학교의 등록금액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.

②장학금은 해당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본 대학에 납입한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.

제7조(서약서제출) ①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선발 확정 후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해외연수 장학생에서 제외하며 출국추천을 취소한다.

제8조(준수사항) ①해외연수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
2. 해외연수 장학생으로서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
3. 자매 대학에서 수업 종료와 더불어 귀국해야 한다.

②해외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진다.

③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 현지 수학도중 중도 포기자는 지불한 장학금을 회수한다.

④파견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귀국조치를 취하며 지불한 장학금을 회수한다.

⑤해외유학연수생(현지 연수중이거나 연수를 마친 자)이 현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자퇴를 하는 경우, 학교는 해당학생에게 부여한 본교생 및 외국유학생의 자격과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외연수장학생 선발지침 및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1조 (시행령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령)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